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호

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일  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공영주차장 내 야영·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주차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 20392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, 2024. 9. 20. 시행)됨에 따라, 야영·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 설치 주체를 규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야영·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규정(안 제1조의3)

야영·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

다른 지방공단의 장으로 규정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생활교통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.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| 개 정 안 | 수 정 안 | 의 견 |
|-------|-------|-----|
|       |       |     |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 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
- 전화☎ 044-201-3811, 3798 / 팩스 044-201-5581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(전화 044-201-3811, 379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